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온라인 클래스 신설	결산	변동성 업데이 트	클린클 래스 신설	자본 시장 법	신용 평가 등급	종류 형 전환
1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투자자신탁1호(H)(채권)	C-P2e	○	-	-	-	-	-
2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투자자신탁1호(UH)(채권)	C-P2e	○	-	-	-	-	-
3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자신탁1호(UH)(주식)	C-P2e	○	-	-	-	-	-
4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자신탁1호(채권)	C-P2e	○	-	-	○	○	-
5	미래에셋연금인디아인프라증권투자자신탁1호(주식)	C-P2e	○	-	-	○	-	-
6	미래에셋연금차이나인프라증권투자자신탁1호(주식)	C-P2e	○	-	-	○	-	-
7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자신탁K-1호(주식)	C-e	○	-	-	-	-	-
8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투자자신탁1호(채권)	C-P2e	○	-	-	-	-	-
9	미래에셋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투자자신탁1호(채권혼합)	C-Pe	○	○	-	-	-	-
10	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투자자신탁1호(주식)	C-e	○	○	-	-	-	-
11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투자자신탁1호(주식)	C-e	○	○	-	-	-	-
12	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1호(주식)	C-e	○	○	-	-	-	○
13	미래에셋퇴직플랜농산물안정형증권투자자신탁(채권혼합)	C-P2e	○	○	-	-	-	○
14	미래에셋퇴직플랜원자재안정형증권투자자신탁(채권혼합)	C-P2e	○	○	-	-	-	○
15	미래에셋FINEMMF1호(국공채)	-	○	○	-	-	-	-
16	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투자자신탁1호(주식)	-	○	○	AG, CG	-	-	-
17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40증권투자자신탁1호(채권혼합)	-	○	-	AG, CG	-	-	-
18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1호(채권 혼합)	-	○	○	-	○	-	-
19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1 호(주식-재간접형)	-	○	○	-	○	-	-
20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1호(주식)	-	○	○	-	-	-	-
21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1호(주식혼합)	-	○	○	-	-	-	-
22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자신탁1호(주식)	-	○	○	-	-	-	-
23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투자자신탁1호(주식)	-	○	-	-	-	-	-
24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자신탁1호(주식혼합)	-	○	○	변경사항 8) 참고			
25	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1호(주식)	-	○	○	AG	-	-	-
26	미래에셋법인전용MMFA-4호	-	○	○	-	-	-	-
27	미래에셋법인전용미국달러우량회사채월지급식증권투자자신탁1 호(채권)	-	○	-	-	-	-	-
28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자신탁1호(H-USD)(주식-파생형)	-	○	-	-	○	-	-
29	미래에셋사랑나눔증권투자자신탁(주식)	-	○	○	-	-	-	-
30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1호 (주식)	-	○	○	-	-	-	-
31	미래에셋솔로몬증기증권투자자신탁1호(채권)	-	○	-	-	○	○	-
32	미래에셋솔로몬증장기증권투자자신탁1호(채권)	-	○	○	-	-	-	-
33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투자자신탁1호(주식)	-	○	-	-	-	-	-

34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H)(채권-파생형)	-	O	-	-	-	-	-
35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파생형)	-	O	-	-	-	-	-
36	미래에셋우량KP채권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파생형)	-	O	-	-	-	-	-
37	미래에셋코리아리딩기업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O	-	-	-	-
38	미래에셋하나1Q개인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O	-	-	-	-	-
39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C-e	-	-	-	-	-	O
40	미래에셋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C-e	-	-	-	-	-	O
41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C-e	-	-	-	-	-	O
42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C-e	-	-	-	-	-	O
43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C-e	-	-	-	-	-	O
44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e	-	-	-	-	-	O
45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e	-	-	-	-	-	O
46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C-e	-	-	-	-	-	O
47	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C-e	-	-	-	-	-	O
48	미래에셋연금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C-P2e	-	-	-	O	-	-
49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러시아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P2e	-	-	-	-	-	O
50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차이나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P2e	-	-	-	-	-	O
51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C-e	-	-	-	-	-	O
52	미래에셋퇴직연금미국리츠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C-P2e	-	-	-	-	-	O
53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P2e	-	-	-	-	-	O
54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C-P2e	-	-	-	-	-	O
55	미래에셋퇴직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P2e	-	-	-	-	-	O
56	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P2e	-	-	-	-	-	O
57	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P2e	-	-	-	-	-	O
58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C-P2e	-	-	-	-	-	O
59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P2e	-	-	-	-	-	O
60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P2e	-	-	-	-	-	O
61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P2e	-	-	-	-	-	O
62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C-P2e	변경사항 7) 참고					-
63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P2e	-	-	-	-	-	-
64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P2e	-	-	-	-	-	-
65	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P2e	-	-	-	-	-	-
66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C-P2e	-	-	-	-	-	-
67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C-P2e	-	-	-	-	-	-

68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C-P2e	-	-	-	-	-	-	
69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C-P2e	-	-	-	-	-	-	
70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P2e	-	-	-	-	-	-	
71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C-P2e	-	-	-	-	-	-	
72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변경사항 7) 참고							-

2. 변경 사항:

- 1) 온라인 클래스 신설
- 2)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 4) 클린클래스 신설
- 5)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 6)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 시 처분 등 관련 사항 반영
- 7) 클래스 명칭 및 가입자격 변경

<대상 펀드: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8) 환매수수료 삭제 및 가입자격 추가

<대상 펀드: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3. 효력발생일: 2017년 08월 14일(월)

4. 변경 내용:

- 1) 온라인 클래스 신설

펀드명	보수	환매수수료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H)(채권)	0.18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UH)(채권)	0.18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0.36	-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	0.13	-
미래에셋연금인디아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0.42	-
미래에셋연금차이나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0.42	-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0.62	-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0.28	-
미래에셋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0.43	-
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0.62	90일미만: 이익금의 70%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0.65	-

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0.45	-
미래에셋퇴직플랜농산물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0.25	-
미래에셋퇴직플랜원자재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0.25	-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0.48	-
미래에셋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0.49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0.47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0.45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0.45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0.41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0.41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0.17	-
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0.47	-
미래에셋연금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0.42	-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러시아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0.12	-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차이나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0.12	-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0.48	-
미래에셋퇴직연금미국리츠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0.27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0.26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0.33	-
미래에셋퇴직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0.2	-
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0.25	-
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0.25	-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0.32	-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0.25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0.12	-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0.2	-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0.42	-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0.26	-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0.26	-
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0.26	-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0.24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0.46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0.12	-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0.1	-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0.3	-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0.25	-

[참조1]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종류C-e	온라인 투자자	해당사항 없음
종류C-Pe (연금펀드의 경우 C-e)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해당사항 없음
종류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해당사항 없음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미래에셋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4.15	4.04	5	5
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11.89	11.72	3	3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투자신탁1호(주식)	13.96	13.33	3	3
미래에셋인텍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주식)	12.28	11.12	3	3
미래에셋퇴직플랜농산물안정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3.17	3.5	5	5
미래에셋퇴직플랜원자재안정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3.67	3.98	5	5
미래에셋FINEMMF1호(국공채)	0.06	0.05	6	6
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12.74	12.21	3	3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 (채권혼합)	-	2.18	4	5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투자 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13.42	2	3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주식)	12.29	12.01	3	3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주식혼합)	8.17	7.88	4	4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13.13	12.61	3	3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8.02	8.15	4	4
미래에셋라틴인텍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5.05	25.68	1	1
미래에셋법인전용MMFA-4호	0.06	0.05	6	6
미래에셋사랑나눔증권투자신탁(주식)	12.33	11.17	3	3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주식)	-	5.23	2	4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1.42	1.89	5	5
미래에셋코리아리딩기업증권투자신탁1호(주식)	12.75	11.85	3	3

4) 클린클래스 신설

펀드명	보수	판매수수료
-----	----	-------

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AG: 0.7 CG: 0.91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4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AG: 0.32 CG: 0.68	-
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AG: 0.49	-

[참조1]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종류AG	(간략)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상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종류CG	(간략)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상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5)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8.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예외)> ¹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¹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p>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제2부. 8.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²</p>	<p>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제5부. 1. 가. 집합투자자총회 등 /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p>	<p><신설></p>	<p>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p>
<p>제5부. 3. 가. 정기보고서 / (2)자산운용보고서</p>	<p>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p>	<p>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p>

²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5부. 3.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신설>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5부. 3. 나. 수시공시 /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 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제5부. 3. 나. 수시공시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³	2.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	2.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³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p><u>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u>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u>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u></p>	<p><u>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u>,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u>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u></p>
<p>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⁵</p>	<p>4.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라 (생략)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p>	<p>4.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p>

⁴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만 해당됨.

⁵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43조(신탁 계약의 변경)	<p>① ~ ③ (생략)</p> <p>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49조(금전 차입 등의 제한)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p>① ~ ⑥ (생략)</p> <p>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6)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 시 처분 등 관련 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8.가.투 자대상 <채권 > ⁶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제2부.8.가.투 자대상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 ⁷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17조(투자 대상자산 등) ⁸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도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

⁶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⁷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⁸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p>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p> <p>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p>	<p>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p> <p>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p>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⁹	<신설>	<p>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p>

7) 클래스 명칭 및 가입자격 변경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클래스 명칭>	종류 C-W	종류 C-F
<가입 자격>	<p><u>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입 또는 환매하는 투자자,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u></p>	<p>- <u>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u></p> <p>- <u>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u></p> <p>- <u>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u></p> <p>- <u>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u></p>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	------

⁹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클래스 명칭>	<u>종류 C</u>	<u>종류 C-P</u>
<클래스 명칭>	<u>종류 C-e</u>	<u>종류 C-Pe</u>

8) 환매수수료 삭제 및 가입자격 추가

<대상 펀드: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환매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종류A, 종류A-e, 종류AG, 종류CG:</u>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 <u>종류A, 종류A-e, 종류AG, 종류CG 외:</u> 90일미만: 이익금의 70% 	<u>환매수수료 없음</u>
<종류 C-F 가입 자격>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u>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u> - <u>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u>

미래에셋자산운용(주)